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38
----------	------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령 적  
합성 확보

##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나.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
- 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개정사항 추가 및 제외 요청 반영

라. 기타

- (1) 입법예고(2017. 11. 23 ~ 12. 13)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가목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를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  
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  
관”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제5항 중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전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및 심의 위원을 위촉할 때 장애인을 최소 1명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묘지、 화장장、 봉

안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불입하고”를 “납입하고”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라목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제13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3호”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교육원 내의 식당, 이·미용실, 커피숍, 사우나실, 프로그램운영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 시설 등을 제3자와 계약하거나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와의”를 “따라 시설을 임대하거나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그 시설을”로, “제3자와의 계약서에 당해 계약자 이외의 자가 운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임대 또는 위탁계약서에 직접운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3조를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다목의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40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2조(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①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인을 포함한 15인”을 “2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자”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인”을 “2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각 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목”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  
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관리담당관으로”를 “대기정책과로”로, “02-2115-7759”를 “02-2133-1025”로 하며, “대기관리담당관실(02-2115-7763)”을 “대기정책과(02-2133-3659)”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서울특별시천연가스자동차구입 재정지원자금”을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를 “충전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 2133-6692)**